

## 이벤트를 활용한 헬스장 계약 시 주의사항

옷차림이 한층 가벼워지는 이맘때면 헬스장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진다. 이에 발맞춰 최근 헬스장을 비롯해 여러 운동 관련 업체들의 신입회원 가입 유치 이벤트가 한창이다. 소비자 또한 좀 더 나은 조건으로 헬스장을 이용하기 위해 이벤트 기회를 활용하기도 한다. 하지만 이런 경우 장기계약을 유도하거나 해약 시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.

### 중도해지시 신용카드 취소수수료 공제

소비자는 헬스장 3개월 이용조건으로 사용요금 2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. 1주일정도 이용하던 중 개인사정으로 인해 헬스장 이용이 어려워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청하였다. 헬스장에서는 이용료와 위약금, 신용카드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급 해준다고 하였다. 신용카드 수수료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게 맞는지 상담센터에 문의하였다.

### • 상담결과

이용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「여신전문 금융업법」 제19조 3항 중 신용카드 가맹점의 준수사항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이 부담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. 또 공정거래위원회에는 헬스장 이용계약 중도해지 시 위약금 이외에 신용카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「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한 무효조항으로 본다. 해당내용을 헬스장에 설명하고 이용료와 위약금만 공제하고 소비자에게 환급하도록 하였다.

## 헬스장 계약 후 사용 개시 전 청약 철회하는 경우

소비자는 할인 행사 전단지지를 보고 헬스장에 방문하여 1년 회원권 99만원을 신용카드 7개월 할부 결제하였다. 헬스장은 다음 달부터 이용하기로 하고 집에 돌아왔다.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 충동 구매한 것 같아 헬스장에 전화 연락해 계약취소를 요청하였다. 헬스장에서는 위약금 10%를 공제하고 취소해준다고 하였다. 소비자는 위약금 공제 없이 취소가 가능한지 상담센터에 문의해왔다.

### • 상담결과

체육시설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개시일 이전에는 총 이용금액의 10% 공제 후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.

또한 20만원 이상의 금액을 3개월이상 할부거래의 경우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도 가능할 수 있음을 소비자에게 안내하였다.

## 중도 해지가 안 된다고 주장하는 장기회원권

소비자는 길거리 이벤트 전단지지를 보고 헬스장을 방문하여 6개월 PT회원권을 구입했다. 막상 운동을 시작하고 보니 생각만큼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 1개월 이용 후 계약해지를 요청하였다. 헬스장은 6개월 이벤트 회원권은 해지가 안 되는 회원권이라고 주장하며 계약해지를 거부하였다. 소비자는 계약 당시 이런 내용을 듣지 못했고, 만일 그런 조건이었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상담센터에 문의해왔다.

### • 상담결과

1개월 이상인 헬스장의 이용계약은 계속거래에 해당해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.

계속거래 등의 해지·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 기준에 따라 총 계약대금의 10%가 위약금으로 부과된다. 소비자에게 이용기간에 해당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% 위약금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은 환불이 가능함을 안내하였다.

## 주의 사항

### 헬스장 계약 및 이용 시

#### ■ 장기 계약은 신중하게 한다.

헬스 회원권 계약을 하기 전 직장 근무 여건, 자신의 건강 상태,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고 단기간 이용해 본 후 자신의 상황에 맞게 기간을 늘려가는 것이 합리적이다.

#### ■ 중도 해지시 위약금 관련 규정을 확인한다.

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일반적 거래관행에 비추어 과도한 위약금이 규정되어 있다면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다.

#### ■ 장기 이용 계약시 사업자의 폐업 등을 대비해 현금결제보다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도록 한다.

